

# 캘리포니아 주 공지

민법 제 1179.02 5(d)

귀하의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상 소득 증빙은 2020 년 미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귀하의 가구수입이 임대물이 위치한 주 중위 소득의 130% 이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.

따라서 COVID-19 관련 재정난으로 인해 본 고지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고지와 함께 제공된 COVID-19 관련 재정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.

본 서류를 COVID-19 관련 재정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, 본 고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고지에서 요청하는 대로 부지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다시 반납하지 않을 경우, 귀하는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퇴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, 임대인은 15 일 통지가 만료되는 즉시 귀하에게 퇴거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<https://lawhelpca.org/>를 방문하세요.

정보 및 리소스,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[www.LandlordTenant.dre.ca.gov](http://www.LandlordTenant.dre.ca.gov) 를 방문하시거나, 1-833-422-4255 로 문의하세요.